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7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의자 : 안철수 · 김은혜 · 김소희  
서일준 · 송석준 · 신성범  
김예지 · 임종득 · 김성원  
김위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자체 없이 변경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학사(學事)”를 “학사(學事),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집정지”를 “모집정지나 해당 학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과태료) ① 제34조의5제4항, 제5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

---

---

---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모집정지나 해당 학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  
지원 배제

### ③ (생략)

##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 ① 제34조의5제4항, 제5항 및 제6항 단서에 따  
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  
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